



일리노이 이민 난민 권익옹호 연합

피난민과 망명인들을 위한 정부 보조

Public Assistance for Refugees and Asylees (Korean version)

**나는 비시민권자인 피난민이나 망명인이다.
어떤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나?**

만일 당신이 비시민권자로서 피난민이나 망명인이라면, 다음의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:

현금

- 필요한 가족을 위한 임시보조 (TANF)
- 사회보장 보조금 (SSI) - 자격이 된후 처음 7년 동안만 해당.
- 일리노이주 맹인과 장애자를 위한 보조 (AABD)
- 일리노이주 과도기 현금보조 (TA)
- 난민 보조 - 자격이 생긴후 처음 8개월 동안만 수혜가능
- 사회보장 은퇴연금

의료

- 의료보조 (Medicaid)
- 아동 의료보조 (Kidcare)

음식

- 후드 스탬프 (Food Stamps)
- 부녀자, 유아, 아동 음식 보조 프로그램(WIC)
- 학교 점심 식사와 아침 식사 보조

교육

- 초, 중, 고 12년 간의 교육 (K-12)
- 타이틀 IV 연방 정부 장학금과 학자금 대부
- 헤드 스타트

위에서 말한 의료보조 프로그램에 등록했을 경우,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 것인가?

- 아니다! 1999년 5월 이민국은 피난민과 망명인의 경우, 법적 영주권 신청 허가를 받는데 있어 어떤 정부 보조를 받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.
- 또한 어떤 종류의 정부보조를 받았다해도 보조를 신청할 때 사실대로만 진술하였다면, 시민권 신청 시 문제될 점이 없다.
- 그러나, 장기 양로원 체류치료를 부담하는 의료보조(Medicaid), 그리고 필요가족을 위한 임시 보조 (TANF) 와 같은 현금보조 혹은 사회보장보조금 (SSI) 은 다음의 조항에 해당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:
 - 만일 당신이 가족일원의 보조금 혜택에만 생계를 의존하면서 법적 영주권 신청을 할 때;
 - 혹은 만일 당신이 법적 영주권 자로서 처음 5년 동안 가족일원의 보조금 혜택에만 생계를 의존할 때 당신의 이민신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, 이런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한한다.
- 만일 위조를 범하지 않았을 경우,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!

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일리노이 이민 난민 권익 옹호 연합에
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.
(312) 332-7360; 팩스: (312) 332-7044; 이메일: info@icirr.org